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전철수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27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1월 14일

발 의 자 : 전철수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최웅식, 유찬중, 김인제, 최영수,
김광수(도봉), 김진철, 이석주,
이숙자, 우미경, 유동균, 맹진영
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현행 「주택법」 개정사항 및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시행사항을 반영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현행 「주택법」 개정 및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정·시행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조항을 「서울특별시 주택 조례」에서 삭제하고 이 조례로 이동·신설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택법」, 「공동주택관리법」, 「서울특별시 주택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 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) ① 시장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

2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

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,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%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〈신 설〉</p>	<p>제5조의2 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) ① 시장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<p>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,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%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</p>